

의안번호	제62호
회의연월일	2025. 6. 2. (제565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령)

제출부서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제출연월일	2025. 5. 20.

총포화약계장, 범죄예방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흉기난동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도검·석궁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56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화약류를 차량으로 운반할 때 경계요원을 탑승토록 하는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판매·소지 등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 신체검사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유효기간 설정 및 신체검사서 진단서 발급기관을 확대함(제5조제2항1호, 제5조의2제1호, 제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2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5호·제5항제1호·제7항, 제34조제2항제1호, 제42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 1) 신체·정신 건강 진단서류의 합리적인 인정기준일을 설정하여 치안 행정업무의 대국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 개선
 - 2)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종합병원·병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허가를 발급받고자 하는 국민에게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건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이라면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 나. 총포 등 판매소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의 내용을 구체화함(제16조의2)

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여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허가갱신에 대한 요건을 규정함(제28조)

마.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화약류 관련 기술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함(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제30조의2,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별표 10의2)

바. 별표 및 별지 중 일부 양식에 대해, 구법 명칭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표기를 현행법 명칭으로 현행화하고, 첨부서류 등 내용을 개정 시행규칙에 맞게 변경(별표 14,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3,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의2, 제25호, 제27호, 제27호의

2, 제29호, 제34호의4, 제35호, 제36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3호,
제44호, 제45호, 제46호, 제47호, 제4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를 “법 제6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약류판매

업”을 “화약류판매업”으로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 후단”을 “법 제6조의2 본문”으로, “시·도경찰청장”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 위치 변경(구조물 일부에 고착시킨 것은 제외한다)
2. 화약류 판매소의 화약류 저장소 또는 경비초소 수리·보수(이 경우 주요 설계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화약류 저장소의 수리·보수는 영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제1호·제2호 시설의 자물쇠 또는 경보장치 보수

-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법 제6조의2제1항”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시·도경찰청장”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4 중 “법 제6조의2제1항”을 “법 제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총포 소지”를 “총포·도검·석궁 소지”로, “수렵용”을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며, 수렵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유해조수구제용을 제외한 총포와 분사기, 전자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건설용타정총”을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타정총”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동의서(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를 “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총포”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8조의 제목“(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을“(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소지허가”를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로, “만료일”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총포 소지”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제2항”으로, “총포에”를 “총포 및 석궁에”로, “총포가”를 “총포 및 석궁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조제5항제1호”를 “같은 조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포”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총포 소지”를 “총포·도검·석궁 소지”로, “수렵용”을 “총포의 경우 수렵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1조제4항제5호”를 “제21조제4항제6호”로, “총포소지허가”를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총포”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만료일”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충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를 “(충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포소지허가를 한”을 “충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한”으로, “충포소지허가를 받”을 “소지허가를 받”으로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 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
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
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
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
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
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진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매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
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원을 배
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

는 10발이하, 1.5미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과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게 할 것

6. 철관류·케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11.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비닐도 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5퍼센트이상인 되는 장소에서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14.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동력선 그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심선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는 때에는 전선·충전부 그 밖의 정전기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구멍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전압·전원·발파모선·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하는 때에는 작업자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류를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할 것
-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에게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암층·암질, 사용하고자 하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갱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는 장전하거나 갱도의 폐쇄작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갱안에서 폭약을 운반하는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전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갱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단하게 배선하여 갱도폐쇄작업을 하는 때에 그 선의 절단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갱도를 폐쇄하는 때에는 발파시에 돌덩어리등이 갱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갱구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측할 것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치)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이상(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지를 한 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을 것

제29조의6(발파후의 조치) 발파를 끝낸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의 유무를 검사·확인한 후

(대발파에 있어서는 발파후 30분이상을 경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둘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점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②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만, 질산염
 ・ 과염소산염등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

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나. 얼어 굳어진 다이나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6. 영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1호, 제29조의3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식물보호법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적재방법)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적재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 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거나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탄·공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신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않을 것
4. 화약류는 다음 각 목의 물건과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않을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기계류·광석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독물·극물·방사성물질 및 그 밖의 유해성 물질

② 제1항제3호는 같은 항 제4호 외의 물건과 화약류를 함께 싣는 경우의 차량적재량에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따른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약류와 제1항제4호 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별표 10의2에 따른 화약류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의3(운반방법)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운반방법의 기술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표 13에 따른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야 하며, 20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3호를 따를 경우 예비운전자를 태우지 않을 수 있다.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반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않은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00미터 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않을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리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과 관련된 조치를 확실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류로 된 신발을 신지 않을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에 싣지 않을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라센·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을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을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 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 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통로로 운반하는 경우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통로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차량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 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을 것

3. 번화가 및 그 밖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

제40조의4(운반표지) ①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를 운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지를 해야 한다.

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 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다.

2. 야간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 앞뒤의 보기 쉬운 곳에 달 것

②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붉은 색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10킬로그램 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 이하의 폭약
3. 100개 이하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4. 1만개 이하의 총용뇌관
5. 1천개 이하의 실탄·공포탄 또는 미진동파쇄기
6. 100미터 이하의 도폭선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 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을 운반책임자로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운반 및 그 밖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해야

한다.

- ③ 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 운반 차량을 운전하게 해야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만료일”을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만료일”을 각각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제5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발파작업일지: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표 14의 제2호나목(1)의(차), (2)의(아), (3)의 (나) 및 제3호나목(1)의(마) 중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한다.

별표 17의 제6호다목 중 “총포”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6조제1항(제6조의2제1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조의3제1항)”으로 하고,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부

별지 제7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생활안전과”를 “총포·화약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생활안전과”를 “총포·화약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란 중 “총포 소지허가”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로 하며, 유의사항란 중 “총기”를 “무기류”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첨부서류란 제5호 중 “동의서(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합니다)”를 “동의서”로 한다.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부(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다만, 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하고, 처리절차란 중 “생활안전과”를 “총포·화약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처리절차란 중 “생활안전과”를 “총포·화약담당부서”로 한다.

가.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의 처리기관란 중 “(생활안전과장)”을 “(총포·화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2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

고, 첨부서류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부

별지 제20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운반계획의 운반수단란 중 “종류”를 “종류 및 차량번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운반계획의 운반수단란 중 “종류”를 “종류 및 차량번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의3서식 중 “총기소지”를 “총포 등 소지”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제6조)”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제6조의3)”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의2]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관련)

가 나		화약	폭약	화 공 품									
				공 업 용 기·전 기·관		신 관		실 탄· 공 포 탄	도 폭 선	폭탄·어뢰· 로켓탄·포탄 등으로 작약이 장전된 것 (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	꽃 불 류		그 의 공 (소 제 사 한 제 외)
				특 별 용 기 에 있 는 것	그 밖 의 것	신 관 (포 경 용 제 외)	포 경 용 신 관				크 래 커 블 인 옥	그 밖 의 꽃 불 류	
화 약			○	○			○	○	○	○		○	○
폭 약		○		○				○	○	○			○
화 공 품	공업용 기·전기· 관	특별용기에 들어있는것	○	○		○	○	○	○				○
		그 밖 의 것			○	○	○	○	○				○
	신 관	신 관 (포 경 용을제외)			○	○		○	○	○			○
		포경용신관	○		○	○	○	○	○	○			○
	실 탄 · 공 포 탄		○	○	○	○	○	○	○	○			○
	도 폭 선		○	○	○	○	○	○	○	○			○
	폭탄, 어뢰, 로켓탄, 포탄등으로 작약을 장 전하여 있는것(소이 제를 사용한 것 제외)		○	○		○	○	○	○				○
	꽃 불 류	크래커블· 인 옥										○	
		그 밖 의 꽃 불 류	○								○		
	그밖의 화공품(소이제 를 사용한 것 제외)		○	○	○	○	○	○	○	○			
비 고		①○표는 "가"란에 기재하는 당해 구분의 화약류와 "나"란에 기재하는 당해 구분의 화약류와를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②3종류 이상의 화약류를 함께 실을 경우에는 그 화약류가 이 표에 의하여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특별용기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를 말한다.											
		④특별용기에 수납한 공업용기 또는 전기용기와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의 중량은 화약 4.5톤 이하 또는 폭약 2.25톤 이하로 한다(화약과 폭약을 함께 실는 경우에는 화약 2톤을 폭약 1톤으로 환산하여 혼재하는 양 을 폭약 2.25톤 이하로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승계 사유	[] 양도 · 양수 [] 상속 [] 기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부 - 허가증 원본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나.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행정처분의 내용고지 등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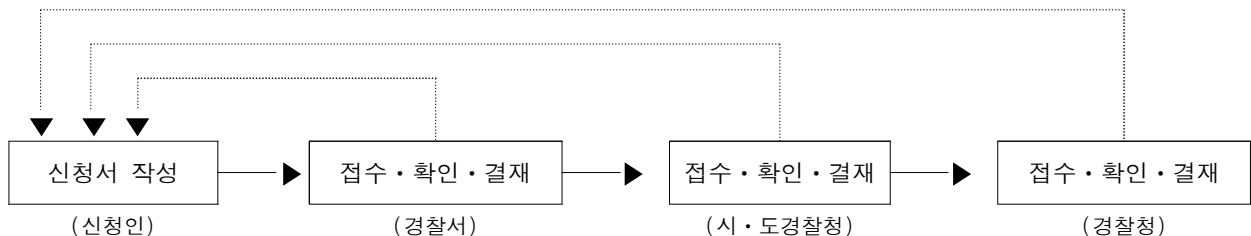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수수료

구 분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총포(공기총을 제외합니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0원	꽃불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5,000원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600원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3,300원
화약·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6,600원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2,600원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0원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600원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6,600원	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1,000원

() 판매(임대)시설 등 [] 변경 허가신청서 [] 변경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변경신청 (신고) 사항	업소명	소재지	
	허가번호	허가 연월일	
	변경사유		
	변경 예정일		
	변경 전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조의2,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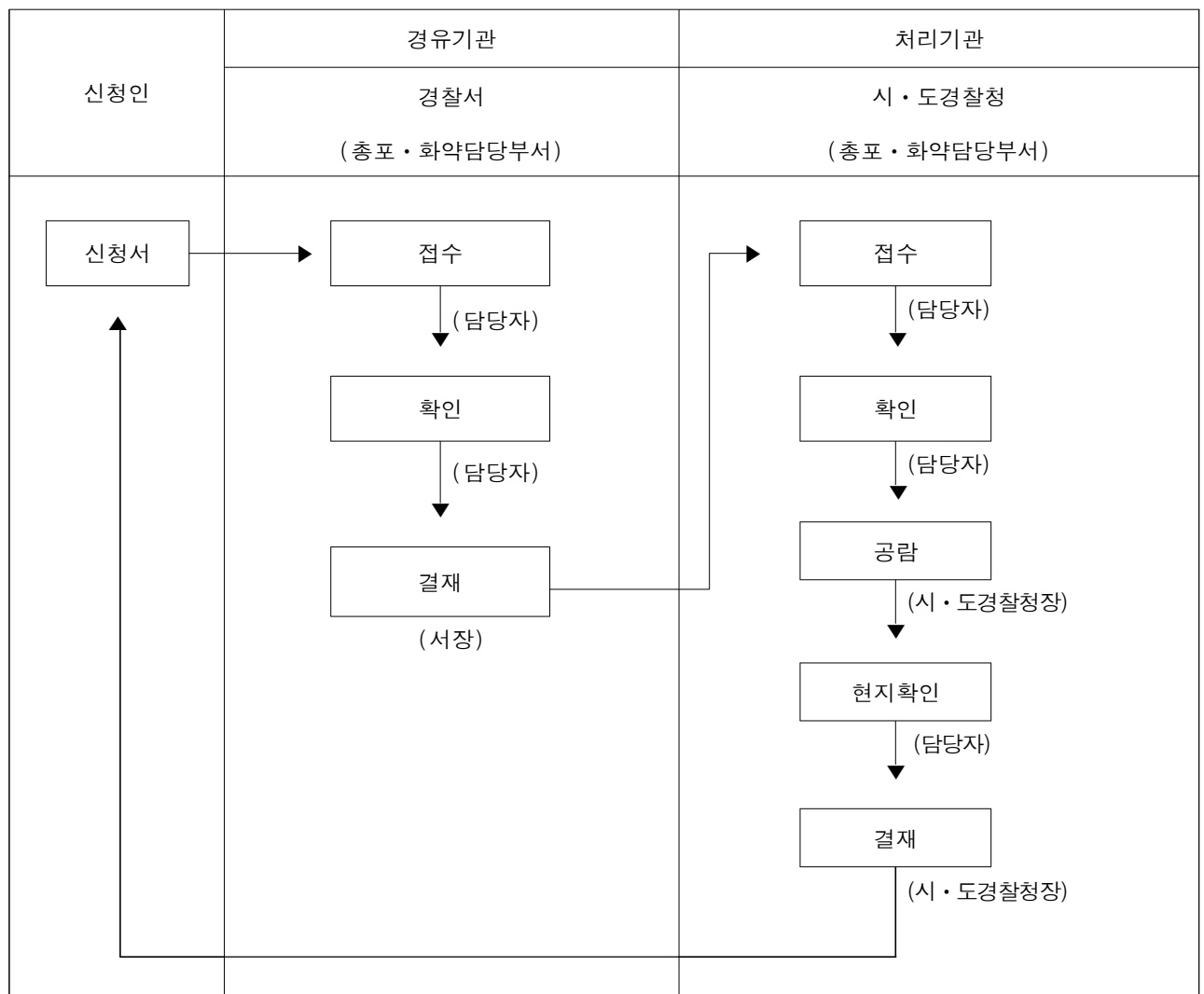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허가신청 시	1. 허가증 2.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수수료 5,000원
	신고 시	1. 허가증 2. 기타(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 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신청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제 호

() 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업소 소재지			
판 매 업 허 가 번 호		판 매 업 허가 연월일	
변 경 사 유			
변경 예정일			
시설 변경 전			
시설 변경 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시설의 변경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〇〇시·도경찰청장

직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처리 일자	처리 기간
			경찰서장 허가 7일 시·도경찰청장 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리책임자 (예술품용 총포 등 소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총포내용	총종(銃種)· 형식	[] 산탄외대 [] 산탄상하쌍대 [] 산탄수평쌍대 [] 삼연쌍대 [] 라이플 [] 공기총스프링 [] 공기총(펌프) [] 공기총(가스) [] 권총회전 [] 권총착탈 [] 공간 [] 원절 [] 중절 [] 레바 [] 수동장전 [] 자동장전 [] 기타				
	총명	제 조국명			명칭	
	구경	공칭			총신의 길이	
		번(구경)			cm	
	대체총신	실측치수			총 전체의 길이	
		mm			cm	
	총번(銃番)	구경			총신의 길이	
적합실탄 공포탄명	번(구경)			cm		
	제 호			총중량	kg	
				탄창장전 탄주	개	

용도	[]호신 []수렵 []유해조수 구제 []사격경기 []어획 []건축 []공업 []기타 산업 []신호·구명 []도살·마취 []시험·연구 []예술품용					
----	---	--	--	--	--	--

입수경위	양 도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청	업소명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수입내용	양도양수연월일	년 월 일
		수입면장번호	수입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임 대	수입국명		수입지
	임대업소명		임대업소 주소

보 관	총포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년 월 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허가증 발급	조사복명	신원·전과 조회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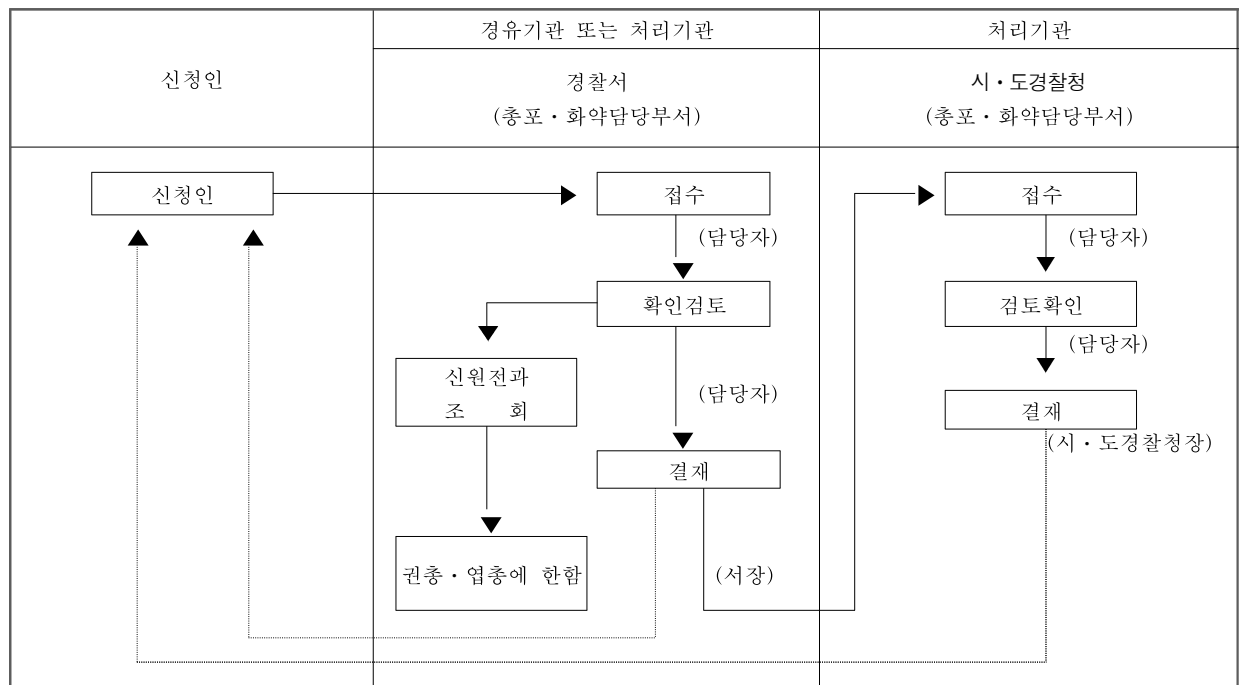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수수료 3,000 ~ 5,000원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것으로,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며, 가스발사총 · 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총포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허가 총포의 경우는 총포 소지 허가증
 - 소지 허가 총포로서 상품화할 경우에는 총포 소지 허가증 반납증명 서류
 - 수입 또는 양도 총포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종 류	[]도검 []비수 []창 []비출나이프 []재크나이프			
형 식	[]비출식 []개폐식 []칼집 수납식			
도검규격	제조국명	명칭		
	날의 길이	cm	칼의 전장	cm
	칼의 길이	cm	총량	kg
용 도	[]수렵 []검도수련 []예식지휘 []도살 []어업건설 []호신장식 []가보문화재			
입수경위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또는 직위	주소	
		허가관청	업소 명	
		제 호 허가번호	년 월	허가연월일
		양도양수연월일		
	수입 내용	제 호 수입면장번호	년 월	수입연월일
		수입국명	수입지	
보 관	도검 소지 허가증이 발급될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관연월일	년 월 일
	보관처		보관책임자 (서명 또는 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3,000원
	3. 도검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유의사항

◆ 도검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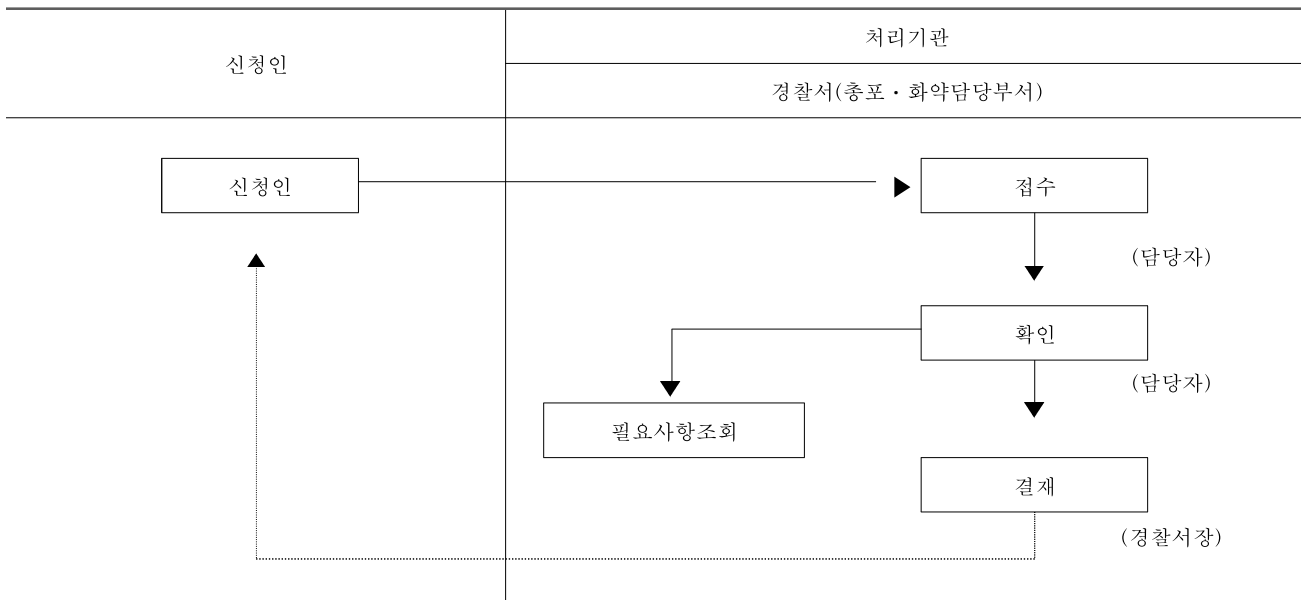
가. 기존 허가 도검류의 경우에는 도검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도검류로서 상품화한 경우에는 해당 도검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 도검류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 질	
형 식	
제조국 및 회사명	
명칭 및 제조번호	
길 이	
중 량	

용 도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수수료
	2. 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4. 분사기, 전자충격기의 경우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 석궁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3,000원

유의사항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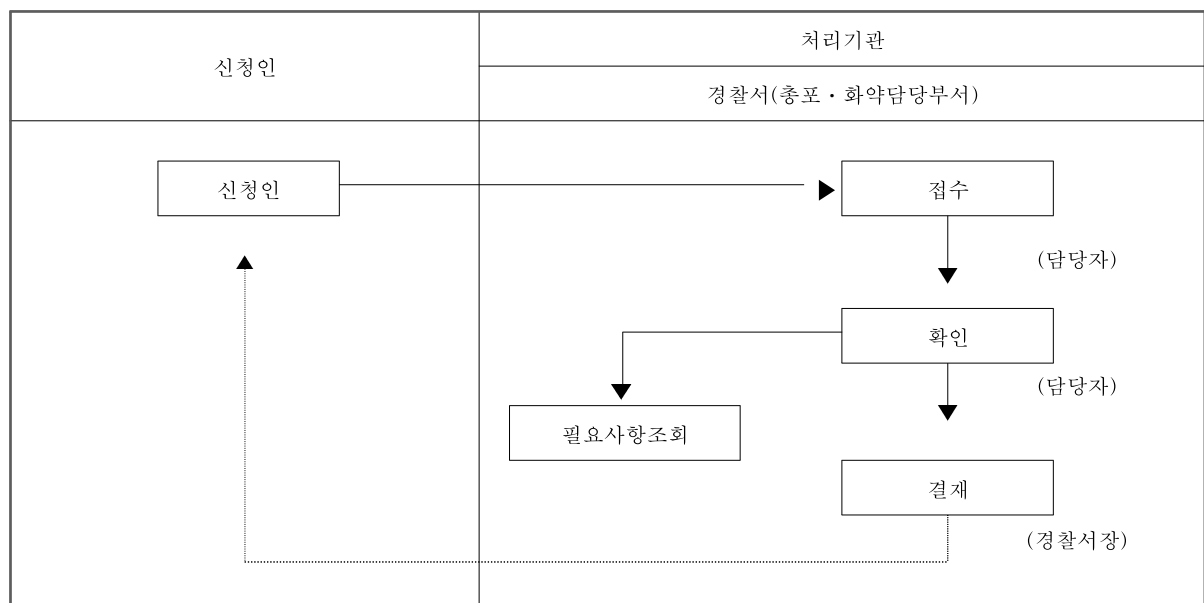
가. 기존 허가된 경우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석궁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직업	전화번호
	주소	

현재 소지 허가 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발급일	
	갱신기간 만료일	
	무기류의 보관장소	
	번호	
	허가관청	

지난 5년간	총포의 경우 수렵 면허장 조수 포획 허가 취득장소	
	총포의 경우 수렵용 화약류 양수 및 실탄 소비상황·사격실시상황	
	다른 무기류 소지허가 내역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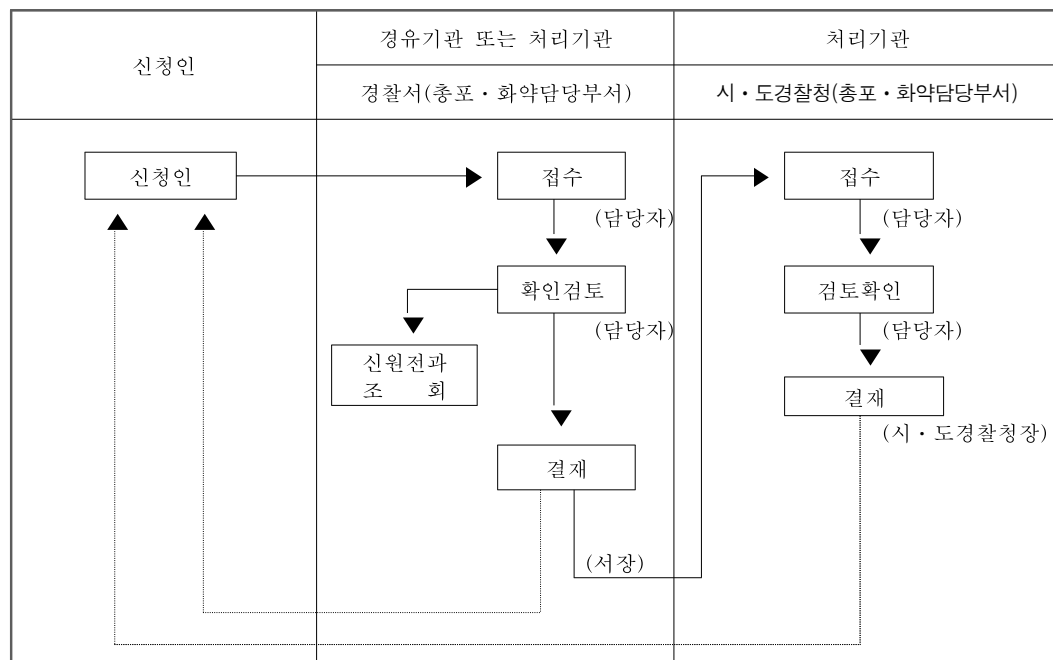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첨부서류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수수료 2,000원
	2.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며, 총포 중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도검,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총포 중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하며, 가스발사총·산업용 타정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격경기용 총포: 사격선수확인증
 - 수렵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제1종 수렵면허증,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 그 밖의 용도에 필요한 총포: 총포의 해당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 소지 허가된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 국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처리절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소지허가 갱신 연기 신청서
[]석궁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현 소지 허가증 내용	허가된 무기류의 종류	
	교부 연월일	기간 만료일
	허가된 무기류의 보관 장소	
	무기류 번호(기재된 사항에 한함)	허가 관청

연기	연기 사유	재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내용	연기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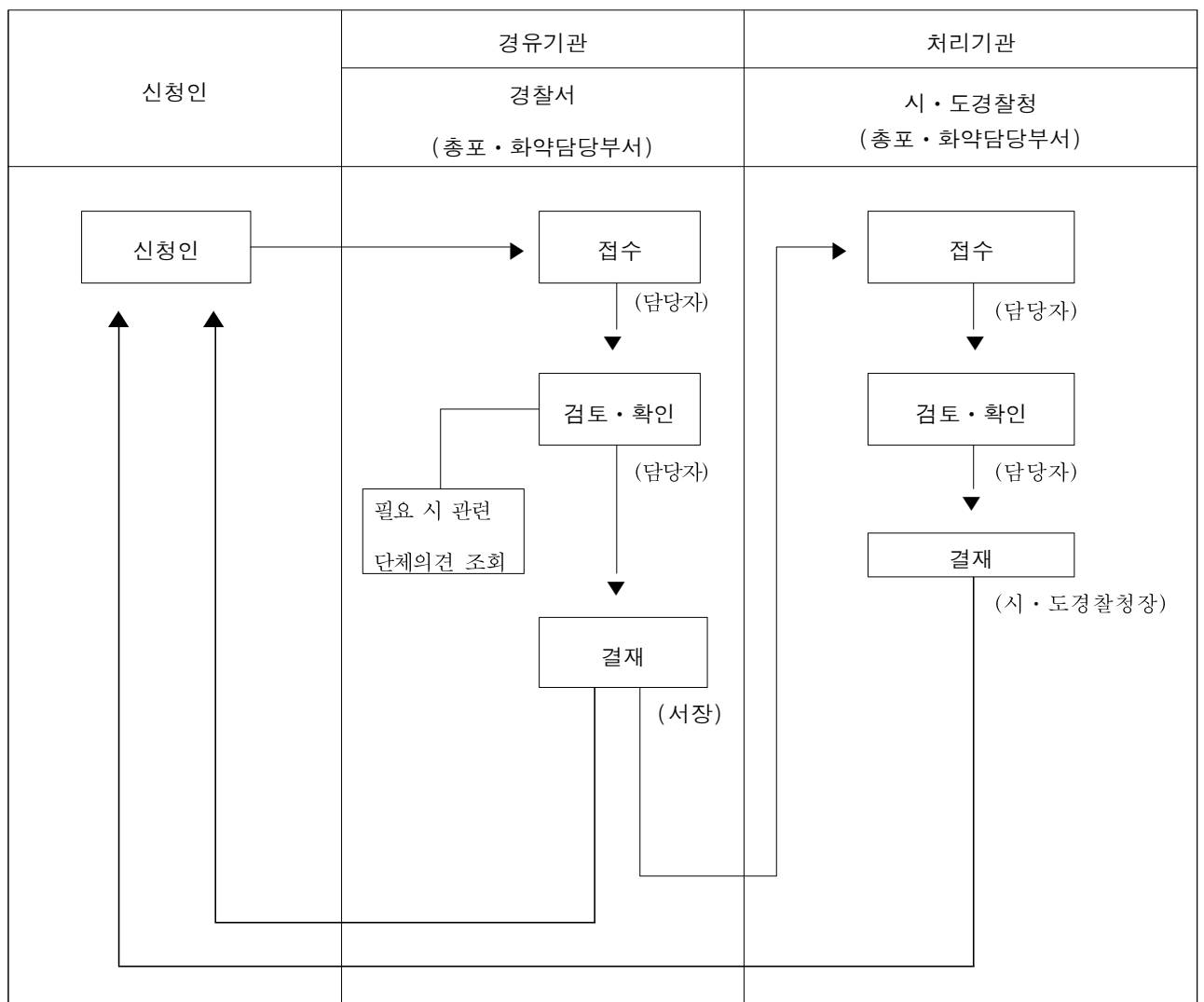
시·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발파작업일지

■ 작성일시: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성자 :										서 명					
										화약류 관리보안 책임자		공 사 장		현 장 장	
화 약 류	양수	양수위치						양수시간							
		양수량 (폭약)						양수량 (뇌관)							
	운반	운반신고 증명서번호						운전자							
		운반책임자						운반차량							
		운반시간 (출발)						운반시간 (도착)							
	사용	사용량 (폭약)						사용량 (뇌관)							
		잔량(폭약)						잔량(뇌관)							
	반납	운반신고 증명서번호						운전자							
		운반책임자						운반차량							
		반납일시 (출발)						반납일시 (도착)							
반납량(폭약)						반납량(뇌관)									
작 업 내 용	순서	발파 시간	천공 경	천공 장	저항 선	공간 격	천공 수	공당 장약 량	지발 당 장약 량	총장약량		발파결과			
											폭약	뇌관	진동	소음	
			(mm)	(m)	(m)	(m)	(EA)	(kg)	(kg)	(kg)	(EA)	(cm/s ec)	(dBA)		
	1														
	2														
	3														
	4														
	5														
	6														
	7														
8															
계															
발파위치 및 계측위치도															
작업자 명단															
안전조치															
특이사항															
첨부서류		1. 운반신고필증 사본 2. 진동소음 파형이 표시된 진동소음계측 자료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9.30>

(앞쪽)

도검 소지 허가증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5cm×3cm)	제조회사				
	명칭				
	날의길이				
	교부일자		용도		
	갱신기간 만료일				
경 찰 서 장 직인					

85mm×5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도검소지자는 반드시 이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개정 2009.9.30>

(앞쪽)

() 소지 허가증 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2.5cm×3cm)	제조국 및 회 사				
	명 칭				
	제조번호				
	교부일자		용도		
	갱신기간 만료일				
경 찰 서 장 직인					

85mm×55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연월일	기재사항변경	확인인
1.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시는 반드시 이 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주 소

□ □ □ - □ □ □

봉 함 엽 서

우체국

요금후납

받는 사람

귀하

□ □ □ - □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증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납부자:

주민(법인)번호: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주 소:

귀하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위반	일시	위반내용	
사항	장소	적용법령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시·도경찰청장

직인

경찰서장

년 월 일

수납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제 호 접는선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경찰청

납부자:	주민(법인)번호: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주 소: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	--	------	---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직인

수납인

접는선

< 안 내 말 씀 >

- ❖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까지 우리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의제기 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1000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허가신청) ① (생략)	제5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서류는 허 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②----- ----- ---. ----- -----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 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 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2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 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 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6조의4 ----- ----- ----- ----- ----- ----- -----			

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
행한 신체검사서

2. 3. (생략)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 개조·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인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총포의 개조·수리업의 허가신청) ①-----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 (생략)	제16조(판매업 등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② ----- ----- ----. ----- ----- -----.
1. <u>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u>	1. <u>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u>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화약류판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u>	3. ----- <u>화약류</u> <u>판매업</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 <u>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u>	제16조의2(판매시설 등 변경허가신청) ① <u>법 제6조의2 본문</u> ----- ----- ----- ----- -----

종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조의2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 전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판매시설 등 변경신고서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 판매소의 보관장치 또는 진열장 위치 변경(구조물 일부에 고착시킨 것은 제외한다)

2. 화약류 판매소의 화약류 저장소 또는 경비초소 수리·보수(이 경우 주요 설계와 용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화약류 저장소의 수리·보수는 영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임대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업(임대업)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도경찰청

3. 제1호·제2호 시설의 자물쇠 또는 경보장치 보수

④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판매시설 변경 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 해야 한다.

⑤ 시·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인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6조의3(임대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 소재지를 관할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는 실탄이 총구 또는 포구 밖으로 발사되지 않도록 총포강의 약실과 가까운 부분을 용접 등 쉽게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타정총·가스발사총·도검·분

하는 시·도경찰청장--.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예술소품용 총포의 구조) 법 제6조의3제1항-----

--.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
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
지 아니한다)

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
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만 해당한다)

가. (생 략)

나. 수렵용 총포: 「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57조제3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같은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증

다. 유해조수구제용 총포: 나
목의 서류 또는 「야생동
·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증(총포
에 의한 포획허가에만 해
당한다)

라. (생 략)

4. (생 략)

-- 따른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다. -----
----- 「야생생
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30조제2
항-----

라.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립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
(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령용 또는 유해조수
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⑤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영 제3조제1항 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폭발물분쇄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총포 · 도검 · 석궁 소지----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하며, 수렵

용 -----

6. -----

----- 유해조수
구제용을 제외한 총포와 분사
기, 전자충격기-----

⑤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
서(건설용타정충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
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
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
다)

2. ~ 4. (생략)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
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
인정보 이용 동의서(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또는 폭
발물분쇄총만 해당한다)

⑥ (생략)

⑦ 허가신청은 별지 제10호의3
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에게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
서 또는 소견서를 허가신청에

1. -----
--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
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타정충 -----
--

2. ~ 4. (현행과 같음)

5. -----

----- 동의서

⑥ (현행과 같음)

⑦ -----

----- 제1항부
터 제3항까지-----
----- 총포·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인 대표자
는 해당되는 사람의 진단서 또
는 소견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
여야 한다.

제28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
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
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총포에 대해서
는 그 총포가 반환될 때까지 소
지허가의 갱신을 유보할 수 있
다.

1. 제21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
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서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28조(총포·도검·분사기·전

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
신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
가---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총포·도검·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
지 -----.

----- 법 제14조의2 또는
제47조제2항-- 총포 및 석궁에
--- 총포 및 석궁이 -----

--.

1. ----- 같은 조
제5항제1호-----

2. (생략)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생략)

5.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제21조제4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소지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포 소지 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해서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갱신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총포 소지허가 갱

2. (현행과 같음)

3.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4. (현행과 같음)

5. 총포·도검·석궁 소지 ----

----총포의 경우 수렵용 ----

6. 제21조제4항제6호 -----

----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② -----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신 연기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 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신 설>

-----.

제28조의2(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한 --- 소지허가를 받-----
-----.

제29조의2(화약류 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초유폭약을 제외한다)의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약류를 갱내 또는 발파장소에 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낭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되, 화약 또는 폭약과 공업용 뇌관 및 전기 뇌관은 동일인이 동시에 운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발파장소에서 휴대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그 발파에 사용하고자 하는 예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발파현장의 작업보조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출납량 및 그 사용하고 남은 양, 천공(穿孔: 구멍 뚫기) 방법 또는 약실에 대한 화약류의 장전 방법등의 작업지시를 할 것
4. 장전전에 천공된 구멍 또는 약실의 위치 및 암반등의 상황을 검사하고 적절한 안전장전 방법에 의하여 장전할 것
5.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흩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한번 발파한 천공된 구멍에 다시 장전하지 아니할 것
7.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그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사용하지 아

니할 것

8.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
9. 물속의 천공된 구멍에서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화약류에 방수조치를 할 것
10. 온천공 그 밖의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공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약류의 이상 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 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12. 천공된 구멍에는 모래·진흙 그 밖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없는 메지를 사용하고, 장전구로서는 마찰·충격·정전기 등에 대하여 안전한 장구인 다짐대 등을 사용하며, 공기장전기는 반드시 땅에 닿게 할 것
13. 발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한 위험구역안에 감시

원을 배치하여 그 구역안에
관계인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
고 발파의 경고를 하는 등 위
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점
화할 것

14. 동일인의 연속점화수는 도
화선 1개의 길이가 1.5미터이
상인 때에는 10발이하, 1.5미
터미만인 때에는 5발이하로
하고, 0.5미터미만인 때에는
연속점화를 하지 아니할 것

15. 점화한 후에는 그 점화한 발
파공수와 폭음수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할 것

16. 발파는 화약류 관리보안책
임자의 책임하에 할 것. 이 경
우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화약류 사용자가 발파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②초유폭약에 의한 발파의 기술
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유폭약의 취급이나 장전작
업중에는 습기가 차거나 불순
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기폭량에 적합한 전폭약을
같이 사용할 것

3.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거나
공동이 있는 천공된 구멍에는
지나치게 장약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장전기는 사용전후에 반드시
점검하고 청소를 할 것

5. 장전기는 장전작업중에 발생
하는 정전기가 소산(疏散: 분
산시킴)할 수 있도록 땅에 닿
게 할 것

6. 철관류·케도 또는 상설의
전기접지계통은 접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뇌관류는 장전기에 의한 장
전작업중에는 정전기의 영향
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둘
것

8.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
기회로의 연결작업을 하는 사
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는 물건을 제거할 것

9. 이상건조시등 정전기가 발생
하기 쉬운 조건하에서 장전기

<신 설>

를 사용하는 때에는 뇌관이
달린 폭약을 천공된 구멍의
입구에 장전할 것

10. 뇌관이 달린 폭약은 장전용
호오스로 장전하지 아니할 것

11. 도화선발파를 하는 때에는
연료유가 스며들지 아니하도
록 비닐도화선을 사용할 것

12. 장전작업이 끝난 후 남은 초
유폭약은 지체없이 화약류 저
장소에 반납할 것

13. 초유폭약은 가연성가스가 0.
5퍼센트이상인 되는 장소에서
는 발파하지 아니할 것

14. 장전후에는 가급적 신속히
점화할 것

15. 발파장소에서는 발파가 끝
난 후 발생하는 가스에 주의
할 것

16.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
터 초유폭약 또는 메지등을
제거하는 때에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3(전기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전기발파를 하는 때에는
제29조의2의 기준에 의하는 외

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
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
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
를 지니거나 전등선·동력선
그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2. 전기발파기 및 건전지는 습
기가 없는 장소에 놓고 사용
전에 전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할 것
3. 발파모선은 고무등으로 절연
된 전선 30미터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전에 그 선이
끊어졌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것
4.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
할 때까지 점화기에서 떼어
놓고, 전기뇌관의 각선에 연결
하고자 하는 다른 끝의 심선
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발파모선을 부설하는 때에는
전선·충전부 그 밖의 정전기
를 일으킬 염려가 많은 것으

로부터 거리를 띄워서 부설할 것

6. 공기장전기를 사용하여 화약 또는 폭약을 장전하는 때에는 전기뇌관을 반드시 천공된 구멍 입구에 두도록 할 것

7. 다수의 전기뇌관을 일제히 발파하는 때에는 전압·전원·발파모선·전기도화선 및 전기뇌관 등의 모든 저항을 고려한 후 전기뇌관에 필요한 전류를 흐르게 할 것

8. 동력선 또는 전등선을 전원으로 하는 때에는 작업자외에는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전선에는 1암페어이상의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할 것

9. 전기발파기의 손잡이는 점화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고정식은 자물쇠로 잠그고, 이탈식은 그 손잡이를 작업자가 직접 지닐 것

10. 전선은 점화하기 전에 화약을 장전한 장소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도통시험 및 저항시험을

<신 설>

할 것

제29조의4(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300킬로그램이상의 폭약을 사용하여 발파하는 경우(각 약실의 폭약량의 합계가 3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발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위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발파의 계획과 작업은 1급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하여금 직접하게 할 것
3. 발파를 하는 장소 및 그 부근의 지형·암층·암질, 사용하고자 하는 폭약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약실의 위치, 폭약의 양, 갱도의 폐쇄, 대피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할 것
4. 갱도의 굴진(掘進: 굴 파기)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

에 필요한 최소량의 화약류만
가지고 들어갈 것

5. 갯안에서 화약류를 운반 또
는 장전하거나 갯도의 폐쇄작
업을 하는 때에는 화기를 사
용하지 아니할 것

6. 갯안에서 폭약을 운반하는
때에는 포장지가 파손되어 폭
약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약포는 약실에 밀접하게 장
전하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
록 할 것

8. 갯안의 도폭선과 전선은 간
단하게 배선하여 갯도폐쇄작
업을 하는 때에 그 선의 절단
그 밖의 장애를 일으키지 아
니하도록 할 것

9. 갯도를 폐쇄하는 때에는 발
파시에 돌덩어리등이 갯밖으
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갯구
까지 견고하게 폐쇄할 것

10. 점화전에 암반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붕괴예정선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표지를 하고,
점화후에는 장전한 폭약이 완

<신 설>

전히 발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붕괴상황을 관
측할 것

제29조의5(불발된 장약에 대한 조
치) ① 장전된 화약류를 점화하
여도 그 화약류가 폭발되지 아
니하거나 폭발여부의 확인이 곤
란한 때에는 점화후 15분이상
(전기발파에 있어서는 발파모선
을 점화기로부터 떼어서 다시
점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한 후
5분이상)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화약류를 장전한 곳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
다.

② 불발된 장약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1. 불발된 천공된 구멍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평행으
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하고
불발한 화약류를 회수할 것
2. 불발된 천공된 구멍에 고무
호오스로 물을 주입하고 그

<신 설>

물의 힘으로 메지와 화약류를
흘러나오게 하여 불발된 화약
류를 회수할 것

3. 불발된 발파공에 압축공기를
넣어 메지를 뽑아내거나 뇌관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게
하면서 조금씩 장전하고 다시
점화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불발된 화약류를 회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장소에
적당한 표시를 한 후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지시를 받
을 것

제29조의6(발파후의 조치) 발파를
끝낸 때에는 그 작업자는 발파
에 의한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
성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 천반
(天盤: 천장의 암반), 옆의 벽 그
밖의 암반에 대하여 위험의 유
무를 검사·확인한 후(대발파에
있어서는 발파후 30분이상을 경
과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후)
가 아니면 발파장소 및 그 부근
에 사람의 출입이나 접근을 금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7(꽃불류 사용의 기술상의 기준) ① 꽃불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는 꽃불류의 종류 및 중량에 따라서 도로·건물·사람이나 가축등에 위해가 없도록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둘 것
2.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 일 때에는 꽃불류의 사용을 중지할 것
3.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의 부근에는 소화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둘 것
4. 술을 마신 사람은 꽃불류를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것
5. 꽃불류(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을 포함한다)는 용기에 넣어 뚜껑을 덮고, 그 용기에는 화기를 접근시키지 아니할 것
6. 삭제
7. 쏘아 올리는데 쓰이는 발사통은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하여 윗방향으로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사용중에는 자주
청소를 할 것

8. 사용준비가 끝난 쏘아 올리는
꽃불류로부터 20미터이내
의 장소에서는 다른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9. 쏘아 올리는 꽃불류는 20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도록
할 것

10. 굳어지거나 습기가 차거나
그 밖의 이상유무를 미리 검
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
는 꽃불류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11. 꽃불류를 발사통안에 넣는
때에는 끈등을 사용하여 서서
히 넣을 것

12. 미리 정한 위험지역안에 관
계인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해발생의 염려가 없음을 확
인하고 점화할 것

13. 꽃불류를 쏘아 올리거나 폭
발 또는 연소시키고 있는 때
에는 그 장소의 부근에서는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의 계량

<신 설>

을 하지 아니할 것

14. 꽃불류의 발사용 화약에 접
화하여도 그 화약이 폭발 또
는 연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사통에 많은 양의 물을
넣고 10분이상 경과한 후에
서서히 발사통을 눕히어 꽃불
류를 꺼낼 것

15. 불발된 꽃불류가 있는 때에
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물에 넣는 등 적절한 안전조
치를 할 것

②쏘아 올리는 꽃불류의 사용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화약류 폐기의 기술상
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방
법으로 처리할 것

가. 화약 또는 폭약은 조금씩
폭발 또는 연소시킬 것. 다
만, 질산염·과염소산염등
의 수용성분을 주로 하는

화약 또는 폭약(질산에스텔 또는 니트로기 3이상이 함유된 니트로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안전한 수용액으로 하여 강물 등에 흘려버릴 수 있다.

나. 일어 굳어진 다이ना마이트는 완전히 녹여서 연소처리하거나 500그램이하의 적은 양으로 나누어 순차로 폭발처리할 것

다. 화공품(도화선 및 도폭선을 제외한다)은 적은 양으로 포장하여 땅속에 묻고 공업용 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라. 도화선은 연소처리하거나 물에 적셔서 분해처리할 것

마. 도폭선은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으로 폭발처리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 또는 연소처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다.

1. 그 화약류의 전량이 동시에 폭발하여도 위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폐기장소 주위에 높이 2미터이상의 흙둑을 설치할 것

2. 폐기장소 주위의 적당한 곳에 붉은색 기를 달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사람외의 통행을 금지할 것

3. 폭발 또는 연소시키고자 하는 화약류는 남은 양을 안전한 장소에 두고 폐기를 시작하되, 앞의 처리가 끝나기 전에는 다음 처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것

4. 연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점화하고, 누구든지 연소중인 화약류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폭발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폭발장소로부터 따로 떨어진 곳에서 미리 도통시험을 할 것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생 략)

② 시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 야생 동·식물보
호법령, 엽총·공기총 또는 석
궁의 취급 요령에 관하여 출제
한다.

③·④ (생 략)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허
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
다)

6. 영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 시행
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1호,
제29조의3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폭발 또는 연소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2(교육면제 평가시험) ①
(현행과 같음)

② ----- 「총포·도검·화약
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에 관한 법령」-----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
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
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

2. ~ 5. (생략)

<신설>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적재방법) ①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적재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운반중에 마찰 또는 동요되
거나 굴러떨어지지 아니하도
록 할 것

2. 화약류는 방수 및 내화성이
있는 덮개로 덮을 것

3. 화약류(초유폭약·실탄·공
포탄 및 포탄을 제외한다)는
신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정량
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
(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싣지 아니할 것

4. 화약류는 다음의 물건과 동
일한 차량에 함께 싣지 아니
할 것

가.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나. 외장이 불완전하여 화약
류에 마찰 또는 충격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다. 철강재·기계류·광석류

<신 설>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
건

라. 독물 · 극물 · 방사성물질

그밖의 유해성 물질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은 동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외의 물
건과 화약류를 함께 신게되는
경우의 차량의 적재량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영 별표 13에
의한 수량 또는 차량적재량의 1
0퍼센트에 미달하는 수량의 화
약류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한 물건외의 물건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종류가 다른 화약류는 동일한
차량에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
다. 다만, 별표 10의2에 의한 화
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운반방법) ①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운반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및 제5호는 영 별
표 13에 의한 화약류를 운반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화약류의 운반은 자동차(2륜 자동차 및 택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야 하며, 200킬로미터이상의 거리를 운반하는 때에는 운송인은 도중에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자 1명 이상을 태울 것.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 차량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3호를 따를 경우 예비 운전자를 태우지 아니할 수 있다.

2. 운반자동차에 경계요원을 태울 것. 다만,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차량 1대로 1개 장소에 일일운반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제2호 기준에 부합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반책임자로 하여금 경계요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는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하여 할 것

4. 야간이나 앞을 분간하기 힘

든 경우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전방과 후방 1
5미터 지점에 적색등불을 달
것

5. 화약류를 실은 차량이 서로
진행하는 때(앞지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00미터이상,
주차하는 때에는 50미터이상
의 거리를 둘 것

6. 화약류의 부근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
니할 것

7.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갈고
리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8. 화약류를 차량에 싣거나 내
릴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등 제동장치를 완
전하게 할 것

9. 화약류를 싣는 때에는 실은
전후에 그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할 것

10. 화약류를 다룰 때에는 철물
류로 된 신을 신지 아니할 것

11. 화약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야간에 신지 아니할 것

12. 뇌홍 및 뇌홍을 주로 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5퍼센트 정도를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3. 트리니트로레졸신납·테트라센·디아조디니트로페놀 및 이들을 주로하는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0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4. 니트로셀룰로오스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23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5. 펜타에리스리트 및 테트라나이트레이트는 수분 또는 알코올분이 15퍼센트 정도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16. 그밖에 운반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가 질척질척한 상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약은 그 화약의 성질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분이 머금은 상태로 운반할 것

②화약류를 운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맞는 통로

<신 설>

로 운반하는 경우에 멀리 돌아가게 되거나 그 밖에 이 기준에 맞는 통로에 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폭에 3.5미터를 더한 너비이하의 도로를 통행하지 아니할 것

2.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질을 쌓아둔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아니할 것

3. 변화가 그밖에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지나가지 아니할 것

4. 삭제

제40조의4(운반표시) ①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은 화약류의 운반중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음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1. 주간에는 가로·세로 각 35센티미터이상의 붉은색 바탕에 “화”라고 희게 쓴 표지를 차량의 앞뒤와 양옆의 보기쉬

운 곳에 붙일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승인
을 얻어 위장표지를 할 수 있
다.

2. 야간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를
반사체로 하고, 150미터이상
의 거리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광도의 붉은 색등을
차량의 앞뒤의 보기쉬운 곳에
달 것

② 영 별표 13에 해당하는 화약
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붉은 색
등만을 차량의 앞뒤에 달 수 있
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
량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0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 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3.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 또
는 전기뇌관

4. 1만개이하의 총용뇌관

5. 1천개이하의 실탄·공포탄
또는 미진동파쇄기

<신 설>

제42조(면허의 신청) ① (생 략)

②제1항의 면허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영 제82조 본문에 따라 경유하여야 하는 관할 경찰서장을 포

6. 100미터이하의 도폭선

제40조의5(운반책임자의 유의사항)

①운송인은 화약류를 운반함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운반책임자를 정하고, 화약류의 종류에 따라 적재·운반 그밖의 취급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운반책임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운반책임자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및 적재상황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운반책임자는 운전기술이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화약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면허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삭 제

3. (생 략)

③ (생 략)

제43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3호서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갱신) ① -----

-----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부하여 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면허갱신 연기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4호의2서

 ---. -----

 -----.

1. 신체검사서(종합병원, 병원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정한다)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④-----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식의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 자면허갱신연기신청서를 면허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 갱신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이내 에 면허갱신을 신청하여야 한 다. ⑤ (생 략)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영 제81 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7. (생 략) <u><신 설></u>	<u>말일</u>-----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장부의 서식 등) ----- ----- -----. 1. ~ 7. (현행과 같음) <u>8. 발파작업일지 : 제34호의4서 식</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연 락 처	(02) 3150 - 1361